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598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부연납 담보로 비상장주식 허용	3

I. 개요

1.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59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희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2. 24.

(3) 회 부 일 : 2025. 12.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부연납 담보로 비상장주식 허용(김소희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연부연납(제71조) ☐ 연부연납 허가 요건 -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	☐ 비상장주식 담보 제공 ☐ 연부연납 허가 요건 - (현행과 같음) -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 또는 <u>상속·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u>

☐ 개정안은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¹⁾에 따르면 금전·토지·보험·국채증권 등 유가증권은 담보로 허용되나,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연부연납제도’는 일시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세금을 일정기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에 있어 기한의

1)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이익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동 제도는 상속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²⁾.

한편, 납세자가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현행법령³⁾상 금전·토지·보험·국채증권 등 유가증권은 납세담보로서 허용되나,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재정경제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환가성이 낮아 담보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임.

2) 대법원 91누9374, 1992. 4. 10.

3)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의 담보로 허용하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과세당국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그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납세자의 연부연납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상속세 과세를 위한 현행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가 가능함.

참고로, 현행법령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① (시가 원칙) 평가기준일 전·후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⁴⁾, ② (보충적 평가방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시가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⁵⁾으로 계산한 금액을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둘째,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없이 납세자의 기한유예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연부연납은 과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한 가산금⁶⁾을 부담하면서 세금을 장기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장주식이 담보로 인정됨에 따라 연부연납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세수감소가 미미함.

셋째, 대다수 중소기업이 비상장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상속인의 사후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 경영을 포기하지 않도록 연부연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이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경영자 평균연령은 55세로, 연령별로 50대가 36.9%, 60대가 27.9%로 고령층 비중이 높고, 60세 이상 CEO 경영자 비율은 2012년 14.1%에서 2024년 33.3%로 급증하였음. 즉 중소기업 CEO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 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24년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 분포]

(단위: 개, %)

구분	업체 수	30세 미만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 69세	70세 이상
전체	386,335	0.4	4.5	24.9	36.9	27.9	5.4
소기업	252,262	0.4	4.7	25.6	36.6	27.3	5.4
중기업	134,073	0.3	4.1	23.5	37.5	29.1	5.5

- 입법정책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납세 담보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외의 세목에도 담보로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제18조7)의 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문 의 처

02)6788-5161